

2024년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

우리 중소기업 등의 상표·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통합(수시 및 정기 4차) 공고합니다.

2024. 6. 1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 : 국내 중소기업의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
□ 지원유형 및 규모

○ 지원유형 :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~70% 지원

구 분	지원방식	지원 유형		모집방식
분쟁대응	개별대응	상표무단선점 대응		수시 (Fast Track*)
		위조·형태모방 대응		정기
	공동대응	상표무단선점 대응		
		위조·형태모방대응	일반형	
			민관협력형	
권리보호	개별대응	일반제조 분야 IP 보호		
		콘텐츠 분야 IP 보호		

* (Fast Track)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(평균 14일 이내)

□ 지원 대상(이하 '지원기업'으로 통칭)

○ 개별대응 :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*인 국내 중소기업**

* (수출기업) 직·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* (수출예정기업) 현지시장조사, 수출계획, 거래처 확보, 계약 체결, 현지 승인 획득,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(붙임1)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)

**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
** (중견기업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

- 단, '콘텐츠 분야 IP 보호'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(예정) 문화콘텐츠* 관련 중소·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

* (문화콘텐츠)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(예술성, 창의성, 오락성, 여가성, 대중성)가 체화된 콘텐츠

- 공동대응 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중소·중견기업(업종단체 포함)이 과반수 포함)

-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(무단선점자, 위조·형태모방자)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,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%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

- '민관협력형 위조·형태모방대응' 지원유형의 경우, 산업별* 협단체 및 회원사가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한정하여 지원

* (예시) 식품, 미용의리기, 의약품, 화장품, 의류·패션, 캐릭터 굿즈, 프랜차이즈, 음악·콘텐츠 등

2. 지원 상세

가.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

□ 분쟁대응 유형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구분	유형	지원 내용	총사업비 (최대)	과업기간	지원조건 (필수서류)
개별	상표무단선점 대응 (Fast Track)	▶상표로써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	40백만원	최대 3개월	무단선점 입증
		▶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,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			역공격 입증
		▶도메인이름 무단 선점* 분쟁 대응전략 지원 *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·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			피해 (의심)입증
	위조·형태모방 대응	▶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,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	40백만원	최대 3개월	피해 (의심)입증
		▶위조·형태모방 대응 이후,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			역공격 입증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구분	유형		지원 내용	총사업비 (최대)	과업기간	지원조건 (필수서류)					
공동	상표무단선점 대응		▶상표브로커 및 특수가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	60백만원	최대 4개월	무단선점 입증					
			▶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,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			역공격 입증					
	위조형태 모방 대응	일반형	▶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,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	60백만원	최대 4개월	피해 (의심)입증					
			▶위조·형태모방 대응 이후,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			역공격 입증					
			민관 협력형	▶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 단계별 집중 지원 <table><tr><th>단계 구분</th><th>지원 내용</th></tr><tr><td>1단계 (실태증거조사)</td><td>온오프라인 위조·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</td></tr><tr><td>2단계 (대응전략실행)</td><td>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단속, 형사단속, 민·형사소송 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</td></tr></table>	단계 구분	지원 내용	1단계 (실태증거조사)	온오프라인 위조·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	2단계 (대응전략실행)	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단속, 형사단속, 민·형사소송 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	100백만원 (단계별)
단계 구분	지원 내용										
1단계 (실태증거조사)	온오프라인 위조·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										
2단계 (대응전략실행)	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단속, 형사단속, 민·형사소송 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										

*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하며, '공동대응' 사업비는 협의체 당 기준

□ 권리보호 유형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구분	유형	지원 내용	총사업비 (최대)	과업기간	지원조건 (필수서류)
개별	일반제조 분야 IP 보호	▶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	12백만원	최대 3개월	국내외 판매현황 입증
		▶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			이의신청 청구서
	콘텐츠 분야 IP 보호	▶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,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산 보호 전략 지원	40백만원	최대 3개월	제작 또는 유통자료
		▶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	12백만원		
	▶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				

*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

나. 지원 범위

□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

구분		정부 지원 비율 (총사업비 중)	수혜자 부담 비율	
			현금	현물*
개별 대응	소기업	70%	10% 이상	20% 이하
	중기업		20% 이상	10% 이하
	중견기업	50%	30% 이상	20% 이하
공동대응**		70%	-	30%

*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

** 공동대응 협의체의 경우 중소·중견기업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경우 대기업 참여 가능

□ 연속·동시 지원

- 지원대상 :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·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·협의체*

* 협의체의 경우 최초 협의체 구성원 중 2개사 이상 포함 시 지원 가능

- 지원범위 : 연속(최대 3년)·동시(연 2회)지원 가능

*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(총 사업비 기준)

- 심사우대 : 공동대응 '위조·형태모방 대응(민관협력형)'의 경우 연내 연속지원(2단계) 신청 시 선정심사 면제* 가능

* 면제 조건 : '공동대응 위조·형태모방대응(민관협력형)' 1단계(실태증거조사)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협의체 중 2단계 지원 적절로 평가된 경우

** 수행기관은 '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'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

구분	정기모집		수시모집(Fast Track)
모집 기간	4차	'24. 6. 1.(토) ~ 6. 26.(수) 23:55	연중(공고일~연말)
결과 통보	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		모집완료 후 7일 이내
비고	- 정기모집은 '(개별)상표무단선점 대응'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- 수시모집(Fast Track)은 '(개별)상표무단선점 대응' 유형에 한하여 적용 -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, 매월 2회(1일~15일, 16일~30일까지) 신청·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실시 -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-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-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		

□ 신청 방법

-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(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방문·우편 접수 불가)
-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[붙임7] 참조
-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, 다수 파일을 등록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

【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
구분	제출서류	일반 신청		간소화 신청		제출 방법
		필수	해당시	필수	해당시	
신청서	지원사업 신청서 [붙임2]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[붙임2] 참조	○		○		온라인 입력
간소화	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[붙임3]			○		시스템 파일 업로드
추가 제출 서류	1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, 중견) 참조 *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	○		서비스 이용		
	2. 사업자등록증(명원), 3개월 이내 발급본 *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	○		서비스 이용		
	3. 대상제품 설명&판매자료 참조 * Fast Track 해당 시 수출증빙으로 갈음	○		○		
	4. 수출 증빙자료(예정자료 포함)		○		○	
	5.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		○	서비스 이용		
	6.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[붙임1] 참조	○		○		
	7. 가점 관련 증빙서류 [붙임1] 참조		○		○	
※ 간소화 신청시 [붙임3]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※ (간소화 신청 미대상) 공동대응 유형 및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※ (공동대응 민관협력형 유형) 참여 협단체의 경우 '신청 동의서·사업자등록증·회원사 확인서'만 제출						

【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
구분	제출서류	필수	해당시	제출방법
수행 기관 신청 서류	1. 사업수행 신청서 [붙임4] 참조	○		제출완료시 자동생성
	2.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[붙임4] 참조	○		온라인 입력
	3. 산출내역서	○		
	4. 사업수행 제안서	○		시스템 파일 업로드
	5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발급본	○		
	6. 제안서 발표자료*		○	
* (발표자료 제출) 콘텐츠 분야 IP 보호 및 공동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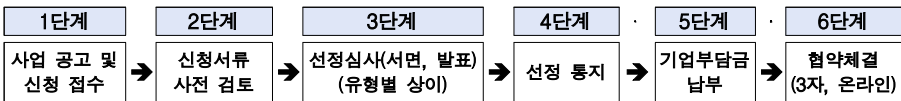
- 수행기관 지정 : 신청 기업·협의체가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(특허법인 등)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

참고 사항	•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(특허법인 등)는 '23-24년 특허/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('23년에 등록된 수행기관은 '24년에 가입 無) •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(S, A 등급) 목록 제공 가능(kbrand@koipa.re.kr로 요청) •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,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, 권리유무호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 필요 •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
-------	--

4. 세부 운영계획

가.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([붙임1] 참조)

□ 선정 절차



□ 선정 기준

- 신청기업 심사 : 선정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
- 수행기관 심사 :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, 추후 집중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

수행기관 분류 기준	•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'80점 이상 : 수행적합', '80점 미만 : 집중관리 대상'으로 구분 • '집중관리 대상'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'지정 수행기관 유지·변경 요청서'를 요청하고,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(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)
------------	---

- 가산점 :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[붙임1] 참고

□ 선정 결과 확인

-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'지원기업 협약관리'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

□ 협약 체결

- **기업부담금** :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,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참고사항	•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가능 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얻고 기업부담금(현금) 납부기간 연장 가능 • '공동대응 협의체'는 기업부담금(현금) 부담 없음
-------------	--

- **협약방식** :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,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

나. 신청 시 유의사항 (필독)

□ 신청 기업(협의체) 지원 제한 사유

- ① 휴 · 폐업 기업(지원사업 공고일 기준)
-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단,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 ·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)
-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인 경우(단,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)
-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·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(단,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)
-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·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
-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□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

-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,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국문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
-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(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)
- 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한 경우
- ⑦ 신청일 기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·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

< 기업 비밀정보 보호 >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,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, 국회 또는 관련 정부 부처의 감사,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'비밀명화' 후 제공할 수 있음

□ 기타 주의사항

- (사업참여 제한)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
 -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최대 3년)
 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(최대 3년)

-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,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,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
 - *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
-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(영구)
 - *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
-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
- **(해외 수행기관)**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, 해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(부가가치세법 제52조)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
- 또한, 온라인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 이용, 협약 체결 등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
- **(위탁정산)**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
 - *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30,000원(VAT 미포함)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, 추후 별도 안내
- **(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)**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
- **(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)**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·해지 가능
- **(부정행위 등 제재조치)**
 - 정부지원금,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
 -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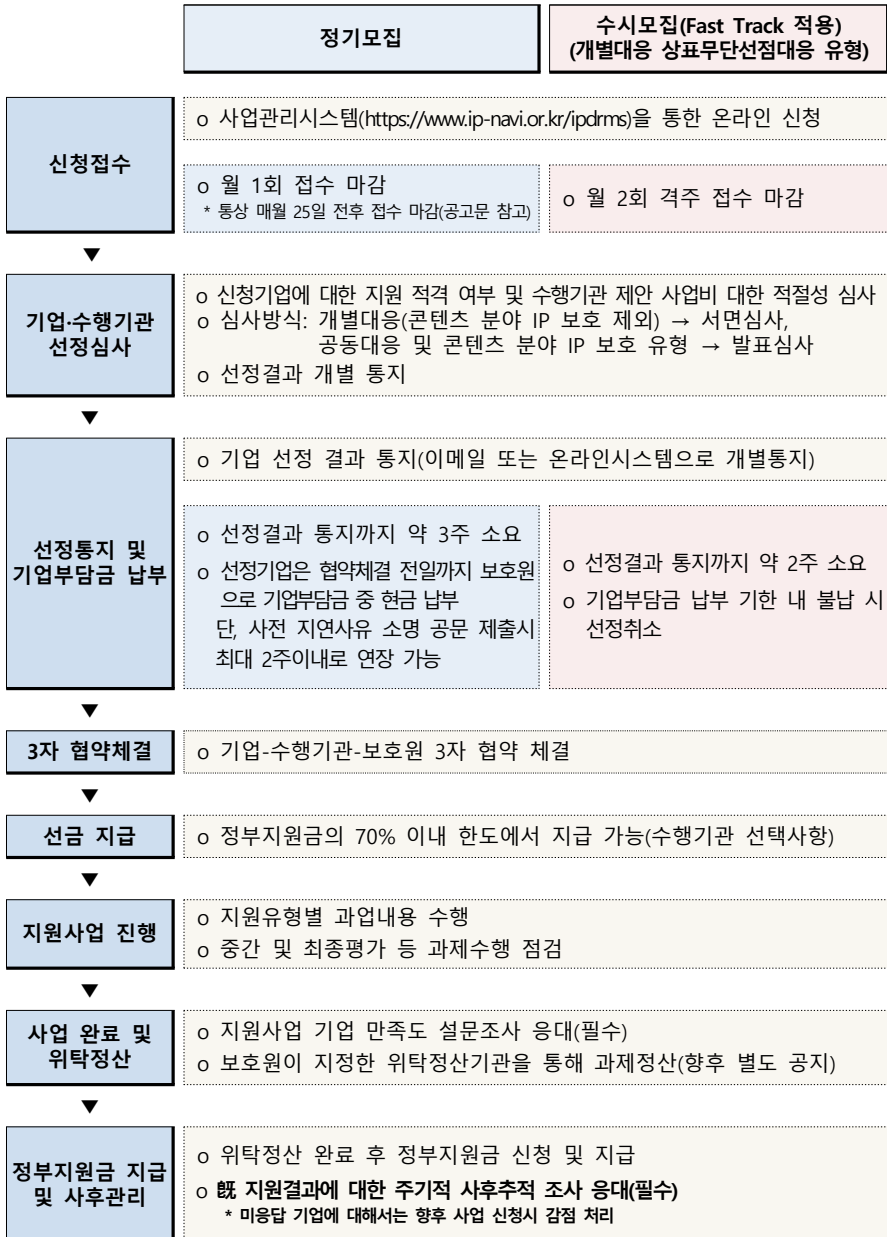
-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

※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, 부정신청,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, 부당이득 반환,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, 정부기관(국회, 감사원, 특허청, 변리사징계 위원회 등)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

※ 공공재정환수법(2020.1.1. 시행)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부정 이익 환수, 제재 부과금 부과(최대 5배),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

- **(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)**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,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 토록 노력할 것(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)

다.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



라. 문의처

○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

구분	세부 분야	담당자 연락처
사업내용 (유형 문의 등)	개별대응 총괄	02-2183-5896
	(개별대응) 상표무단선점 대응 (Fast Track)	02-2183-5895
	(개별대응) 콘텐츠 분야 IP 보호	02-2183-5893
	공동대응 총괄	02-2183-5898
행정	신청 및 선정절차	02-2183-5892
	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	
	온라인 신청(시스템)	02-2183-5893
	정산 관련	02-2183-5879
기타	이메일 문의	kbrand@koipa.re.kr

온라인 사업안내	• (일 정) 상시 게재 • (게시처)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UFVECB0aaA), K-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(https://www.ip-navi.or.kr/kbrands)
온라인 지원사업 신청	• 사업관리시스템(IP-NAVI): 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 (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)

[붙임1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

[붙임2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(기업)

[붙임3]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(간소화 신청 기업)

[붙임4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(수행기관)

[붙임5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

[붙임6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

[붙임7]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